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한민수 · 강준현 · 박균택
문진석 · 송옥주 · 서삼석
이연희 · 김성범 · 허영
박상혁 · 황희 · 이해식
임호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비자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)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(1372)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·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,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·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
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,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(‘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’)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상담센터 설치·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,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).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3(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·운영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상담 제공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·운영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소비자 상담,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
2.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,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
3. 그 밖에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상담센터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3(소비자상담센터의 구축 · 운영) ①</u> 공정거래위원회는 <u>소비자에게 상담 제공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를 구축 · 운영한다.</u> <u>②</u> 공정거래위원회는 <u>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.</u> <u>1. 소비자 상담,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와 관련된 정보 제공</u> <u>2. 소비자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안내,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</u> <u>3. 그 밖에 소비자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</u> <u>③</u> 공정거래위원회는 <u>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</u>

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상담센터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